

民事訴訟等印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①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을 때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장(訴狀)이 각하되거나 소 또는 상소가 취하되어 재판이 확정된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조정·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장·항소장·상고장 및 반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 월2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法律 第7082號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을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별표 1중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란 및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의정부지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란·서울남부지방법원란·서울북부지방법원란·서울서부지방법원란 및 의정부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별표 1의 명칭란중 “서울地方法院”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 高陽支院”을 “議政府地方法院 高陽支院”으로 하

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를 삭제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	-----

별표 2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議政府	抱川	抱川市
	加平	加平邑
	南楊州	南楊州市
	漣川	漣川邑
	鐵原	葛末邑
	東豆川	東豆川市
高陽	坡州	坡州市

별표 3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서울중앙란·서울동부란·서울남부란·서울북부란·서울서부란 및 의정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中央	서울특별시 鍾路區·中區·城北區·江南區·瑞草區·冠岳區·銅雀區
서울東部	서울특별시 城東區·廣津區·江東區·松坡區
서울南部	서울특별시 永登浦區·江西區·陽川區·九老區·衿川區
서울北部	서울특별시 東大門區·中浪區·道峰區·江北區·蘆原區

서울西部		서울특별시 西大門區·麻浦區·恩平區·龍山區
議政府		議政府市·東豆川市·九里市·南楊州市·楊州市·漣川郡·抱川市·加平郡, 江原道 鐵原郡.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高陽市·坡州市
	高陽	高陽市·坡州市

별표 3중 지방법원 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대전의 지원 논산의 관할구역란중 “夫餘郡”을 “鷄龍市·夫餘郡”으로 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관할구역란중 “槐山郡”을 “槐山郡·曾坪郡”으로 한다.

水 原		水原市·烏山市·龍仁市·華城市.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市외에 城南市·河南市·平澤市·利川市·安山市·光明市·始興市·安城市·廣州市·安養市·果川市·儀旺市·軍浦市·驪州郡·楊平郡
	城南	城南市·河南市·廣州市
	驪州	利川市·驪州郡·楊平市
	平澤	平澤市·安城市
	安山	安山市·光明市·始興市
	安養	安養市·果川市·儀旺市·軍浦市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가정법원	관 할 구 역	
		가 사 · 소 년	호 적
서 울	서 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고 등 법 원	행 정 법 원	관 할 구 역
서 울	서 울	서울특별시

별표 7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의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시·군법원 괴산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중 “槐山郡”을 “槐山郡·曾坪郡”으로 한다.

議 政 府		抱 川	京畿道	抱川市
		加 平	京畿道	加平郡

	南楊州	京畿道	南楊州市·九里市
	漣川	京畿道	漣川郡
	鐵原	江原道	鐵原郡
	東豆川	京畿道	東豆川市
高陽	坡州	京畿道	坡州市

별표 8중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행정·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4년 1월20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조영길
국방부장관

◎法律 第7083號

軍用航空基地法中改正法律

軍用航空基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 단서를”을 “제3항의 규정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높